



세종특별자치시



수신 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(산업단지입주기업체)귀하
(경유)

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

1. 관련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4.9.)
-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11480(2021.4.9.)호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4.9.)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1일 평균 55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엄중한 상황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, 1.5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리니,

※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내 감염 추이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2단계 상향조치도 가능함

3. 각 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(입주기업체)에서는 근로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의 고의성,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하는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소관 시설(자유업, 유사(업무)시설 포함 등) 관련 부서에서는 시설별 방역수칙 안내, 현장점검,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완화 불가 조치 사항 >

-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
- 아 래 -

- 적용기간: 2021. 4. 12.(월) 0시 ~ 2021. 5. 2.(일) 24시
- 대상지역: 수도권 외 지역(14개 시도)

1)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
- (대상시설) 클럽, 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(무도장 포함) 및 퀄덤펍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

식당·카페, 파티룸

- (법적근거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(조치내용)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1: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2)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
- (대상시설)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돌잔치 전문점, 목욕장업, 영화관, 공연장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실내체육시설, 스포츠경기(관람)장, 실외체육시설, 학원 등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이미용업, 백화점·대형마트, 종합소매업(300㎡ 이상)
- (법적근거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(조치내용) 방역지침 의무화

* '학원'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21.2.15. 안내한 「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(2.15.)」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

붙임2: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3)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
- (대상시설)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(리조트, 호텔, 게스트하우스, 농어촌민박 등)
- (법적근거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(조치내용)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3: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4) 모임·행사

- (법적근거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(조치내용)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, 그 외 모임·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
 -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
 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붙임4: 수도권 외 지역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5) 종교시설

- (대상시설) 종교시설
 - (법적근거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 - (조치내용) 방역지침 의무화
- * '종교시설'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,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「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(2.15.)」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

붙임5: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6) 기타시설

- (대상시설)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, 경륜·경마·경정, 미술관·박물관, 도서관, 키즈카페, 전시회장·박람회장, 마사지업·안마소, 국제회의 시설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6: 수도권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7) 고위험사업장

- (대상시설) 콜센터, 물류센터
- (법적근거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(조치내용)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7: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8) 교통시설

- (대상시설)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예외)
- (법적근거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(조치내용)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8: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

9) 국공립시설 등

-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·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
 - 경륜·경정·경마장·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% 이내 제한 원칙
 - 이외시설(체육시설 등)은 수용 가능인원의 50%로 제한 원칙
 - * 경륜, 경정, 경마, 카지노 외의 시설은 부처·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, 방역 관리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

10) 사회복지이용시설

-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 등 방역강화
 - 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

11) 직장근무

- 공공기관은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
 - 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 -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 - 회식·대면회의·출장자제
-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

끝.

세종특별자치시장

산단관리담당
김장호

산업입지과장
배원근

전결 2021. 4. 12.

협조자 주무관 오채원 주무관 박태순

시행 산업입지과-3267

접수

우 3015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2층(보람동 세종우체국), / <http://www.sejong.go.kr>
(보람동, 세종특별자치시청) (보람동)

전화번호 044-300-4641 팩스번호 044-300-4619 / rain1105@korea.kr / 대국민 공개